

이탈리아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의 저촉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¹⁾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1. 사건의 개요

1954년,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형제인 Pier Giacomo Castiglioni와 Achille Castiglioni는 공동으로 제10회 밀라노 트리엔날레(Milan Triennale) 산업디자인 부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시회장의 세트 일부를 디자인하였음. Castiglioni 형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해당 전시 세트에는, 원뿔형 형태의 전시 램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램프는 오직 전시 세트의 일부로서 사용되기 위해 디자인되었을 뿐, 전시회 이후에 전혀 산업적으로 제조 및 상용화되지 않았음. 이러한 전시 세트는 해당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음.



<트리엔날레 전시회 대상 수상 전시 세트 사진²⁾>

이후 2015년, Castiglioni 형제 중 한 명의 조카는 Castiglioni 형제의 1954년 대상 수상 작품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1954'라는 명칭의 램프(이하, '1954 램프'라 함)를 디자인했고, 이와 같이 디자인된 1954 램프에 대한 산업적인 생산 및 상용화에 대한 관련 독점권을 프랑스 회사인 Barrisol Normalu에 부여하였음.

1) Corte Suprema di Cassazione Prima Sezione Civile n.11413/2024, 2024. 4. 29.

2) Cristiana Andreotta/Elisabetta Bandera, "The Italian Supreme Court clarifies conflicts in protection of artistic work in Italian copyright law and EU copyright law", DesignWrites, 2024.6.20. (<https://designwrites.law/the-italian-supreme-court-turn-out-the-lights-on-castiglioni-lamp-design-protection-and-clarifies-conflicts-in-protection-of-artistic-work-in-italian-copyright-law-and-eu-copyright-law/#page=1>)(최종 접속일 : 2024.7.16.); Elena Martini, "The Italian Supreme Court rule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 work included in an exhibition stand (and on the consequences of Cofemel)", MARTINI MANNA & Partners, 2024.7.5. (<https://www.martinimanna.com/blog/the-italian-supreme-court-rules-on-the-copyright-protection-of-a-work-included-in-an-exhibition-stand-and-on-the-consequences-of-cofemel/>)(최종접속일 : 2024.7.17.).



<1954 램프 사진³⁾>

Castiglioni 형제 중 Pier Giacomo Castiglioni의 딸은 저작권의 승계인으로서 1954 램프의 디자이너와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부여받은 Barrisol Normalu를 상대로 '1954'라는 명칭을 가진 램프의 판매 등이 트리엔날레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램프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1)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의 판시내용⁴⁾

1심인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Castiglioni 형제의 전시 램프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였음.⁵⁾

2)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시내용⁶⁾

2심인 밀라노 항소법원에서는 1심 판결의 판단을 부정하였는데, Castiglioni 형제의 전시 램프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⁷⁾

3) Cristiana Andreotta/Elisabetta Bandera, 위의 글에서 인용.

4) n.1320/2021 della IP Corte di Milano.

5) 해당 법원의 전시 램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시논리를 정리해보면, 우선 해당 램프 디자인은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는데, 해당 램프 디자인이 제작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주목받는다든 점과 그 미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가 확인되어 일반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즉 해당 램프는 1954년 전시회의 전체적인 전시 세트 구성에서 주목을 끄는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전체 전시 세트라는 특정 맥락에서 그 존재가 필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기능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분명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임.

6) n.2089/2022 della Corte d'appello di Milano.

7) 즉, 1954년 당시 창작되어 전시된 해당 작품의 창작적인 본질은 전시 램프라는 기능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는 전시 세트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음. 그리고 해당 전시 세트의 구성요소인 전시 램프와 해당 금지청구대상인 '1954' 램프 사이에 디자인의 원뿔형 구조의 외부 및 내부에 각각 배치된 빛의 주목을 주는 부분의 각각 다른 위치는 양 램프에서 완전히 다른 빛의 산란 형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해당 항소법원은 부분적인 유사성을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의 판시내용⁸⁾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는데, 일단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하여 유럽연합 판례(특히 Cofemel 사건의 CJEU 683/17)를 인용하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을 나타내는 모든 작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EU 판례상의 판단기준 외에 “예술적 가치”의 추가적인 요구도 유지하면서 전시 램프 디자인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아 전시 세트 전체 디자인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음.⁹⁾

3. 시사점

위 판례는 디자인이 독창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의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판례¹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고, 디자인의 저작권으로서의 보호를 완화시켜 판단하기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아울러 강하게 요구하는 등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상판결이 EU 판례상의 판단법리와 저촉되는 이탈리아 판례상의 엄격한 고유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¹¹⁾ 이탈리아 법원에서 EU 판례상의 판단기준 범위 내의 구체적인 판단방법으로 “예술적 가치”를 검토하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고 EU 판례상 기존의 판단법리를 토대로 이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향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함.¹²⁾

따라서 대상판결에 의해 향후에도 이탈리아 법원에서 과거의 태도처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의 판단에서 작품의 독창성 외에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여 EU 판례상의 판단기준과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는 판단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EU 판례상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8) n.11413/2024 della Corte Suprema di Cassazione Prima Sezione Civile(29/04/2024).

9) 물론 항소법원의 판단에서 검토된 양 램프 디자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지하였음.

10) judgment in Cofemel, C-683/17. 해당 판결의 사건에서 CJEU에 포르투갈 대법원이 제기한 핵심 질문은 EU 판례에 따라 회원국이 독창성 이외의 요건(예: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및 독일에서 높은 수준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에 의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부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이에 대해 CJEU는 해당 판결을 통해 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 EU 회원국의 국내법이 어떤 종류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한다면 이는 EU 판례에 따라 의무화된 객관적 요구 사항과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즉 저작권으로서의 보호는 단순히 독창성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하며, 그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다만, 해당 판결에서 CJEU는 기본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 범주가 모두 동일한 법적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으며, 베른 협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디자인 지칭 또는 커뮤니티 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여 다른 법으로서의 보호도 고려할 것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음.

11) Cristiana Andreotta/Elisabetta Bandera, 앞의 글에서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대상판결이 이탈리아 판례와 EU 판례의 예술작품 보호에 대한 저촉에서 이탈리아 판례가 우선시된 것이며, 이탈리아 내의 산업디자인 제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문턱이 다른 EU 판례가 적용되는 관할권보다 높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12) Cristiana Andreotta/Elisabetta Bandera, 앞의 글에서는 위와 같은 견해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대법원의 대상판결이 이탈리아 판례와 EU 판례 간의 해석론상 예술 작품 보호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며, 디자인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규제하는 EU의 법적 범위와 회원국 내의 국가적인 법적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이 문제에 대한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 간의 실제적 대조를 인정하여, 대상판결은 이탈리아 저작권 시스템을 EU 법률 및 관련 판례와 조화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미래 단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아울러 언급하고 있음.

참고자료

- Cristiana Andreotta/Elisabetta Bandera, “The Italian Supreme Court clarifies conflicts in protection of artistic work in Italian copyright law and EU copyright law”, DesignWrites, 2024. 6. 20.
- Elena Martini, “The Italian Supreme Court rule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 work included in an exhibition stand (and on the consequences of Cofemel)”, MARTINI MANNA & Partners, 2024. 7. 5.